

2023년도 임금·단체협약 주요내용

① 주요내용

○ 임금 및 수당

- 임금총액의 1.7% 정률 인상(2023. 1. 1부터 적용)
- 2025년 임금인상방식을 정률 → 정액으로 변경
- 실적평가급 최소지급률(66%) 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
 - 단, 상여수당 지급기준액에는 포함하지 않으며,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시 판결내용을 적용
 - 통상임금 소급 적용기간을 노사합의 시점부터 대법원 판결 시까지로 함
- 직종별 상이한 봉급표(최고호봉) 통일

구 분		기 존	변 경
일반직·전문직		30호봉	40호봉
기술직	1급	38호봉	
	2·3급	35호봉	

※ 기존 최고호봉에서 변경된 구간까지는 25,000원 승급호봉액 일괄 적용

- 가족수당 및 국내여비 공무원 기준 적용 등
 - 가족수당 : 자녀당 1만원씩 인상
 - 국내여비 : 일비, 식비 2만5천원 통일
 - 1·2호 숙박비 상한액 인상(서울 10만원, 광역시 8만원, 그외 7만원)
 - 위험수당 : 본사, 지사, 혈액관리본부, 병원 운전기사 포함

○ **인사 컨설팅을 통한 인사제도 개선**

- 4급 승진제도, 다면평가제, 보직자 평가제 등 컨설팅을 통한 제도 개선

※ 컨설팅업체는 노사 동수(同數)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선정

- 4급 승진제도를 대체할 개선안을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4급
근속승진의 경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승진비율을 15%로 적용하고
폐지

○ **병원사업장 교대제 간호인력의 근로조건 개선**

- 정부에서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가(70%)로 야간간호수당으로 지급
- 병원사업장 유급수면휴가 제도 도입 (7:1 기준 원칙)

○ **혈액사업장 운영 관련 지원 확대**

- 혈액사업장 야간 공급·시설관리 근무체계 개선
- CRM센터 운영 및 모바일 헌혈기념품 개선
- 간호직 근무복(16만5천원), 보건직 가운(6만원), 간호·보건근무화
(7만원) 지급액 기준 인상
- 혈액원 전산업무 담당(1인) 핸드폰 지원비 3만원 지급
- 간식비 4천원 → 5천원 인상

○ **자기계발비, 문화활동비 지원금액 조정**

- 자기계발비 : 10만원 → 5만원 / 어학시험 접수비 지원범위 포함
- 문화활동비 : 10만원 → 15만원

○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단일호봉 개선

- 정규직 전환대상자 결원 발생 시 정규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채용
-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무기계약직 근무기간 전부 인정 및 단일호봉 개선

※ '단일호봉 개선'외 사항은 임금단체협약 체결일(2023.8.8.) 이후 즉시 적용

○ 그 외 사항

- 원거리전보직원(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발령)의 범위에 가족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미혼직원 포함
- 성비위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 분리 조치
- 중소도시 헌혈센터 운영시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사 공동 협력

② 적용시기 : 2024. 1. 1.

※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

③ 행정사항

- 본 협약 중 규범적 효력부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(일반적 구속력)에 의거하여 전 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